

환경영향평가개론

01. 환경영향평가와

경제발전



I 환경영향평가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SSD)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입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사업으로 인해 환경적 피해가 점차 커짐에 따라 각종 계획 및 개발사업을 수립하기 이전에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란 정책 및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분석·평가하여 부정적인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과정의 일환이며,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II 환경영향평가가 왜 도입되었을까?

1. 경제 및 국토개발 방향에 따라 나타난 환경 문제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 및 국토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1962년부터 시작된 박정희정부의 경제개발5개년계획으로 전국 곳곳에 공장과 사업장이 수없이 들어섰고, 울산 및 여천공단과 마산수출자유지역 등 해안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업단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철저한 성장 위주의 정책 기조 하에서 설사 공해산업일지라도 수출경쟁력만 있으면 적극적으로 육성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963년에 제정된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하여 공업 입지의 확보, 용수 공급을 위한 댐 건설, 주택 및 도로 건설 등 거점개발방식의 국토개발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거점개발정책은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 지역에 공업 및 인구를 편중시키는 결과를 낳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였을 뿐 아니라, 많은 환경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2. 수도권 및 동남권 중공업 개발로 인한 토양 및 수질의 폐기물문제, 중금속 오염 대두 (1970년대)

1970년대에는 철강공업, 각종 기계공업, 석유화학공업 등을 중심으로 하는 중화학공업 육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 과정에서 창원기계공업단지, 여천석유화학단지, 구미전자공업단지 등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중화학공업 중심의 거점개발 전략은 수도권과 동남권 일부지역에 공업시설 및 인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도시 및 산업단지의 과밀화와 환경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시의 취수장 부근 BOD는 1971년 40.2mg/L까지 악화되었고, 한강에서는 기형물고기가 잡히기 시작하였으며, 1974년 중량천 하류의 BOD는 374.92mg/L로써 악취로 인해 그 주변을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같은 시기 낙동강 하류의 경우도 오염도가 크게 증가하여 김해 연해의 해태 양식이 불가능할 정도였고, 부산·마산·울산 해안에서는 기준치(0.05ppm)의 2~3배에 달하는 수은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표 1 4대강 수질오염도(1975~1977)

구분	BOD			PH	DO	비고
	1975	1976	1977.7	1977.7	1977.7	
한강(서울근교) 평균	5.4(1.2~8.5)	4.8(1.3~8.5)	4.2(1.2~9.4)	3.8~7.3	3.6~8.0	(최저~최고) WHO : 6 일본 : 5
낙동강(부산근교) 평균	2.4(1.8~3.1)	2.1(1.8~2.6)	3.6(4.1~5.4)	7.0~7.6	6.1~6.5	
금강(신탄진, 부여근교) 평균	4.0(1.9~7.9)	2.7(1.8~4.0)	1.9(1.8~2.0)	7.2~7.3	5.2~6.0	
영산강(나주근교) 평균	3.4(2.2~4.3)	3.7(3.4~6.8)	5.2(4.5~5.9)	7.6~7.7	6.1~6.7	

출처 : 한국환경기술개발원(1996). 「한국의 환경 50년사」.

SO₂의 대기 내 농도는 1967년부터 계속 상승하여 1969년부터 미국의 당시 연방 환경기준인 0.02ppm과 일본의 0.04ppm을 상회하였고, 수도권 인구증가로 인해 서울의 일 최저기온의 연평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20년대 6℃에서 1975년에는 8.6℃로 상승하였습니다. 한강 근처의 농경지에서 재배된 채소는 납, 카드뮴, 망간, 철 등의 중금속 검출량이 기준을 초과하였고, 난방용 연탄사용이 증가하면서 연탄쓰레기가 주변의 대기를 오염시키게 되었습니다. 또한, 도시와 공업단지의 영향에 따른 주요 하천의 오염도도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1977년 10월부터 자연보호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었고, 그 해 「환경보전법」과 「해양오염방지법」이 제정되는 등 정부에서도 환경정책에 대한 고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은 환경오염문제가 정부의 실제적인 정책사안으로 인식되었음을 의미하므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실질적인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환경정책은 개발을 위한 보완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3. 전국의 도시화 및 공업화 가속으로 인한 수질오염 및 대기오염 악화(1980년대)

1980년대는 1960~70년대에 축적된 경제력과 산업 및 사회구조의 기반 위에서 국토를 더욱 체계적으로 개발 및 관리하려고 하였지만, 토지투기와 함께 도시화와 공업화가 가속되면서 환경오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수도권에 입지 가능한 도시형 업종에 관한 예외 조항을 크게 늘려 1977년 14개에서 1988년 190개로 도시형 공업입지 조항이 확대 되었고, 결과적으로 수도권 내 전체 공장의 42%가 무등록 공장으로 이들에 의한 환경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하천, 호수, 해양 등의 수질오염이 심각하게 나타났고 공장, 생활하수 등 내륙 오염원이 증가하였으며, 임해공업단지의 건설로 수질오염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또한 화학, 석유화학, 금속제련 업체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들로 인해 대기오염이 악화되면서 산성비문제를 초래하였습니다. 화학, 석유화학, 금속제련 업체와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특히 황산화물이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 되었는데, 공단지역에서 발생하는 아황산가스는 주거지역에서 발생하는 배출량보다 3~15배 이상 높았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대기 중에 산성비를 형성하였고, 이는 강과 호수의 어류에 피해를 미쳤을 뿐 아니라 건물, 교량 및 구조물 등의 부식, 식물의 수분흡수 억제, 토양의 유기물 분해를 방해하는 등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표 2 산성비 추이(1985~1987)

단위: Ph

	1985	1986	1987
서울	5.5	5.3	5.1
부산	5.1	5.2	5.4
대구	5.4	5.4	5.3
인천	5.8	5.5	5.2
울산	5.0	5.2	4.9

출처 : 한국환경기술개발원(1996). 「한국의 환경 50년사」.

환경오염으로 인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져가는 만큼 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의식을 높이게 되었고, 정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전 예방 원칙을 세워 경제개발계획 수립시 환경부문과 관련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보전업무 활성화를 위해 1980년 환경청을 발족하고 전국 6개 지역에 환경지청을 설치하였습니다. 1981년에는 「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의 원칙과 환경문제의 해결에 경제 원칙이 적용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대상이 대규모 공공개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고, 이에 1986년에는 국책사업에만 한정되었던 환경영향평가를 민간 대형 개발사업에까지 확대시켰습니다.

4. 환경기반시설의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환경오염 악화(1990년대)

경제발전과정에서 쓰레기매립지, 소각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등의 환경 기초시설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해 폐수와 폐기물의 처리 문제가 정치·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환경부하는 이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발전에서 따른 환경부하의 효율적, 효과적 저감에 환경정책은 물론 경제, 개발 관련 정책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였습니다.

표 3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의 환경부하량 지표(1992년)

	인구밀도(인/km ²)	GNP (백만달러/km ²)	석유소비 (bbl/일/km ²)	쓰레기 배출 (g/km ² /일)	BOD 배출 (g/km ² /일)
한국	438	2.8	11.94	510	19,327
미국	27	0.6	1.73	51	370
영국	234	4.1	7.21	198	378
일본	327	8.9	14.02	264	11,557

출처 : 한국환경기술개발원(1996). 「21세기를 향한 환경정책의 과제와 추진방향」.

그러나 1980년대 말 경공업부문의 산업조정 지연 등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인해 기업활동의 효율성 증대를 명분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국토환경의 보전과 관련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었는데,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10개의 용도지역을 5개로 단순화하고, 토지 이용 행위 제한을 개발 목적과 보전 목적으로 구분하여 개발지역의 행위 규제를

완화하면서 전 국토에서 개발 가능한 토지의 비중이 개정 전 15.6%에서 41.7%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환경 기초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난개발이 붐을 이루었고, 더욱더 환경오염을 부추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법」은 체육시설설치, 산지개발, 특정지역개발,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설치, 군사시설사업, 토석·모래·자갈·광물채취사업 등 6개 사업을 추가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15개 분야, 47개 단위 사업에서 17개 분야, 59개 단위 사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1990년대에는 크고 작은 환경오염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990년 팔당호 골재채취논란, 1991년 낙동강 폐놀 오염사고, 1994년 낙동강 권역 상수원수 오염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의 환경에 대한 의식이 매우 고조되었습니다. 1995년 환경부에 등록된 민간단체의 수가 204개에 이르게 되었고, 시화호 방조제 축조로 인한 수질오염문제와 영월 동강댐 건설, 그리고 새만금간척사업 등 민간단체의 다양한 환경운동이 펼쳐졌습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지 주민의견수렴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지서 초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후관리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환경처 장관이 협의내용 이행 여부를 조사, 확인하도록 하였습니다.

표 4 환경 의식의 변화(1982~1997)

연도	문제의 중요성 및 순위		문제의 심각성(%)	
	환경문제(%)	순위	매우 심각	매우 심각+심각
1982	5.7	7/14	17.2	71.4
1987	17.1	3/9	-	-
1990	20.8	2/7	15.6	77.2
1992	-	-	27.3	75.6
1996	33.1	1/6	37.5	90.6
1997	22.7	1/7	42.2	94.2

출처 : 환경부(2010). 「환경30년사」.

낙동강 폐놀 오염사건



폐놀수사-환경대책 강력반발

야당·시민단체 검찰줄속처리 미봉책 되풀이 분노
대통령 사과·관련장관 경질요구

'시민힘'에 24개 단체 참여...환경장관·두산 대표 고발

낙동강 폐놀수사 관련 야당·시민단체 검찰줄속처리 미봉책 되풀이 분노 대통령 사과·관련장관 경질요구 '시민힘'에 24개 단체 참여...환경장관·두산 대표 고발

오늘 기초의회 투표

당선자 내일 오전중 편명될듯

- 일시 : 1991년 3월 14일
- 장소 : 대구광역시 낙동강 상수원
- 사건 내용 및 경위

: 1991년 3월 14일 10시경부터 경상북도 구미시 구포동에 있는 두산전자의 폐놀유티크 저장 탱크에서 폐놀수지 생산라인으로 통하는 파이프가 과열되어 30톤의 폐놀유티크이 유출



천을 거쳐 대구 상수원인 다사취수장으로 흘러들으로써 8시간동안 수돗물을 오염시킴. 수돗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시민들의 신고를 받은 취수장측에서는 원인 규명을 하지 않고 염소를 다량 투입하여 사태를 악화시킴. 이로 인해 시민들이 수돗물을 사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물을 사용해야하는 식품 업체 등이 큰 피해를 입게 됨

○ 사건결과 :

- 1) 대구지방환경청 공무원 7명과 두산전자 관계자 6명 등 13명이 구속되고, 관계 공무원 11명이 징계조치
- 2) 국회에서 진상조사위원회 개최
- 3) 각 시민단체는 수돗물 폐놀 오염대책 시민단체 협의회 결성, 두산제품 불매운동확산

○ 사건으로 인한 영향

- 1)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 증대
- 2) 환경관련 법령 및 규제 강화(환경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공장설립 환경기준 강화, 전국 4대강을 수계별로 관리하도록 하는 유역별 환경관리위원회 구성)

팔당골재 채취로 상수원 오염



○ 일시 : 1990년 4월

○ 장소 : 팔당호

○ 사건 내용 및 경위

: 1990년 4월 17일 주택건축경기의 활성화에 따라 주요건재의 공급부족으로 품귀와 가격상승이 일어나자 정부가 팔당과 임진강에서 골재채취를 허용. 수도권의 상수원인 팔당호에서 준설공사 및 골재채취계획이 수립되자 수질오염논란이 일어남. 경기도의 의뢰로 작성된 '팔당호준설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중금속과 농약류로 인한 수질오염, 호수의 부영양화, 탁도 증가 등이 예상됨

○ 사건결과 :

시험준설 결정이 내려졌으나 환경전문가 및 국민의 부정적인 여론 형성으로 미사리 남한강 안양석산등지에서 대체 공급 결정

○ 사건으로 인한 영향

- 1) 국민들의 환경보전에 관한 관심 증대
- 2)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마련 - 대상사업이 11개 분야 44개 사업에서 20개분야 68개 사업으로 크게 확대, 환경처 장관에게 사업의지중지 요청권한 부여, 환경처장관 환경보전에 관한 중기종합계획 의무수립 등)



소규모 민간개발도 환경평가 실시(난개발 방지)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2000년 8월)

○ 원인

: 1995년 지방화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방자치단체 간의 경쟁적인 개발 분위기 팽배.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 적극 추진. 인구밀집에 따른 수도권 베드타운의 무계획적인 조성으로 인해 수도권 주변 난개발 문제 심각. 팔당 상수원 일대 및 용인 하남 등 수도권지역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아파트 호텔 음식점 등의 난립에 따른 환경피해 문제 나타남.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2000년 5월 23일 난개발대책 등 마련.

○ 주요 내용

: 팔당호와 대청호 주변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내에서 이뤄지는 각종 개발사업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환경당국과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형 민간개발사업(자연환경보전지역내 5000㎡이상 개발사업, 농림지역내 7500㎡이상 개발사업, 준농림지역내 1만㎡이상 개발사업, 녹지지역내 1만㎡이상 개발사업 등)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제'가 도입

5. 국내의 환경에 대한 관심증가(2000년대)

2000년대는 기상 이변으로 인해 기후변화 문제를 둘러싸고 지구 생태계 및 인류 생존의 위기감이 세계적으로 팽배해졌습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였습니다. 2002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for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채택된 정상 선언문화 WSSD 이행계획에서는 세계의 지속가능발전과 인류 문명의 존속을 위하여 환경보전·경제성장·사회발전의 균형있는 발전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교토의정서의 이행 강화,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에너지 보조금 폐지, 화학물질의 안전관리 강화,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으로의 전환 등의 사항을 합의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국민의 삶의 질적 향상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지속가능발전'의 이념이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업 실시 단계에서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위주로 평가하여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 본질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계획 단계에서 사업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 환경성을 사전 평가함으로써 환경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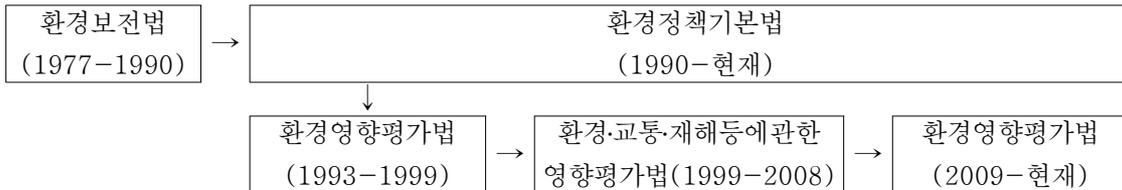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고 검토·평가하여 친환경적인 개발이 되도록 한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유사하지만, 환경영향평가제도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된 후에 사업 실시 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정책기본법」과 개별법에 근거하여 행정계획과 환경 민감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이 확정되기 이전 단계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환경적 측면에서 사전 검토한다는 점에서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 시행을 통해 개발계획의 수립 단계에서부터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승인하는 기관 스스로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고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III 환경영향평가는 언제, 어떻게 도입되었을까?

환경평가 제도 관련 법령은 「환경보전법」(1977-1990), 「환경정책기본법」(1990-1993), 「환경영향평가법」(1993-1997, 2008-현재),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1999-2008) 등이 있습니다.

표 5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의 변천 과정



초기 환경문제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환경전반에 대한 관리 및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보전법」이 1977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대기, 수질 및 소음, 진동 등의 오염 요인, 영향 및 그에 대한 대처방식이 각각 서로 달라 「환경보전법」이 빈번하게 개정되자 1989년 12월 「환경보전법」을 해체하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이 분법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환경평가관련 규정은 1993년에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분리되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정되었고, 이후 1999년에 교통, 재해, 인구 등의 영향평가까지 포함하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으로 개편 및 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환경·교통·재해 분야를 삭제한 「환경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 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면, 1977년 제정된 「환경보전법」 제5조(사전협의)에 행정기관이 시행하는 도시개발, 산업입지의 조성, 에너지개발 등에 대한 협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처음 도입되었으나 평가서작성방법 등 하위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시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1981년 2월 「환경영향평가서작성에관한규정(환경청고시 제81-4호)」이 제정·고시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1986년 「환경보전법」개정을 통해 사업자의 범위가 민간부문(민간 대형개발사업)으로 확대되었고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의 제정으로 주민의견 수렴 및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시기, 협의절차 등 구체적·집행적 사항까지 정해야 하는 등 입법상의 문제와 제도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의 제정되었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기본적인 틀이 수립되었습니다. 특히 난개발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소형 민간개발사업(16개 분야 59개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평가대상 지정제도, 과태료 관련 조항의 신설로 환경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였으며, 1997년 「영향평가법」의 개정으로 전문 검토기관을 설립토록 하여 평가의 질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1999년에는 환경·교통·재해·인구 등 영향평가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근거를 두고 별도로 시행됨으로써 동일한 사업이 2가지 이상의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절차의 중복과 비용의 과다 지출 등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통합하여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대상사업 및 지역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범위확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는 스코핑(Scoping)제도를 도입하였습



니다.

2003년에는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의 영향평가 관련서류에 대한 공개의무를 신설하여 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평가서초안 요약서의 인터넷 공고·공람을 통하여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 주민 등의 공고·공람 및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사업별 특성 및 환경영향정도를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기간을 조정하여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착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한 추가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표 6 법령 주요 내용 변화

연도	법령	주요 내용
1977	「환경보전법」 제정	-보건사회부장관과 사전협의
1979	「환경보전법」 개정	-평가대상 확대 -협의절차 신설 : 환경청장→사업주관행정기관장에게 계획 조정·보완 등 요청
1981	「환경보전법」 개정	-사업자 범위 확대 : 행정기관의 장→행정기관·공공단체장, 정부투자기관장 -평가 대행 신설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대행 가능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983	「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평가대상 확대
1986	「환경보전법」 개정	-사업자 범위 확대 : →평가대상사업을 실시하는 자
1989	「환경보전법」 폐지	
1990	「환경정책기본법」 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4절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실시 -사후관리 : 환경처 장관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함 -평가대상 확대 -평가대행자 범위 확대 -협의내용 이행계획서 제출 -이의신청 및 재협의 제도 신설
1993	「환경영향평가법」 제정	-제도의 틀 수립 : 정의, 대상사업, 평가 분야 및 항목, 평가기준, 대상지역 등 -평가대행자 지정 제도(환경처 장관이 지정) -협의내용 관리·감독 : 승인기관의 장이 하도록 함(기존: 협의기관의 장) -사후환경영향조사 -벌칙 및 과태료 관련 조항 신설
1997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평가서 검토 등을 위한 전문기관으로써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설립 -협의기준 초과 부담금 부과징수 ·환경영향평가대행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지침 ·협의기준 초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199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정	-영향평가제도 통합 -스코핑 제도 도입
200	「환경·교통·재해등	-스코핑 제도 보완(주민의견수렴 등)



연도	법령	주요 내용
4	에 관한 영향평가법 개정	-공사시행 후 환경영향재평가 가능 -연구기관이 영향평가기술연구를 하도록 규정추가
2008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영향평가제도 분리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2012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이전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통합 -사전환경성검토->전략환경영향평가로 변경

